

안전보건공단 전국 연락처

기관명	주 소	전화번호
서울지역본부	서울특별시 동작구 노량진로 74 유한양행빌딩 14, 15층	02-828-1662
서울북부지도원	서울특별시 중구 칠패로 42(봉래동1가10번지) 우리빌딩 7, 8층	02-3783-8351
강원지도원	강원도 춘천시 경춘로 2370(온의동) 한국교직원공제회관 2층	033-815-1056
경인지역본부	인천광역시 서구 한빛로 15(가정동 491)	032-570-7261
경기남부지도원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권광로 511(이의동)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13층	031-259-7264
경기북부지도원	경기도 의정부시 추동로 140(신곡동) 경기북부상공회의소 1층	031-828-1951
경기서부지도원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광덕4로 230(고잔동) 센트럴시티 2층	031-481-7542
경기동부지도원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쇄골로 17번길 3 소곡화관 2층	031-785-3356
부천지도원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송내대로 265번길19(상3동 538-3) 대신프라자 3층	032-680-6520
부산지역본부	부산광역시 금정구 중앙대로 1763번지 26(부곡동 64-31)	051-520-0594
경남지도원	경남 창원시 의창구 중앙대로 259(용호동 7-3)	055-269-0520
경남동부지도원	경남 양산시 동면 남양산 2길 51(석산리 1440-1) 양산노동조합청사 4층	055-371-7512
울산지도원	울산광역시 남구 돌산로 146(달동 615-8) 국민은행빌딩 2, 4층	052-226-0564
대구지역본부	대구광역시 중구 국채보상로 648 호수빌딩 19, 20층	053-609-0563
경북동부지도원	경북 포항시 남구 포스코대로 402(대도동 124-4번지)	054-271-2024
경북북부지도원	경북 구미시 3공단 1로 312-23(임수동)	054-478-8064
광주지역본부	광주광역시 광산구 우산동 무진대로 282 무역화관 8, 9, 11층	062-949-8784
전남동부지도원	전남 여수시 무선중앙로 35	061-689-4911
전북지도원	전북 전주시 덕진구 건산로 251(인후동 1가 807-8) 고용노동부 종합청사 4층	063-240-6563
제주지도원	제주 연삼로 473(이도2동 390) 중소기업지원센터 4층	064-797-7526
대전지역본부	대전광역시 유성구 엑스포로 339번길 60(문지동)	042-620-5634
충남지도원	충남 천안시 서북구 광장로 215(불당동 492-3) 충남경제종합지원센터 3층	041-570-3411
충북지도원	충북 청주시 흥덕구 가경로 161번길 20(가경동) KT 3층	043-230-7116
본부 서비스업재해예방실	인천광역시 부평구 무네미로 478(구산동 34-4)	032-510-0647



위생서비스업

위생 및 유사서비스업 사고사례 만화집

일하는 사람들의
생명 and 건강을 지켜주는
산업재해예방
중심·전문기관 입니다.

안전보건공단은 일하는 사람들의
생명 and 건강 보호를 통해 안전한 일터,
튼튼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는
산업재해예방 중심·전문기관입니다.



마음으로 전하는 안전보건 서비스 **서비스업 안전** ^{+(터하기) 사업}

안전터하기
사업 소개

안전^{+(터하기)} 란

서비스업 사업장과 생활주변에 안전을 더 함으로써
모든 국민이 행복하고 건강한 삶을 누리자는 의미

사업내용

서비스업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사고 사례를 전파하고
재해예방OPL(One Point
Lesson), 스티커 등과 같
은 콘텐츠를 전달해 주는 자
원봉사 서비스입니다.

- ▶ 2012년 30만 개의 서비스업 사업장을
500명의 안전지킴이 요원들이 찾아
갑니다.
- ▶ 동 사업은 고용노동부와 안전보건
공단이 함께 합니다.



「안전보건공단」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의 약칭입니다.

당신의 안전이 가족의 행복입니다

산업재해에 따른 손실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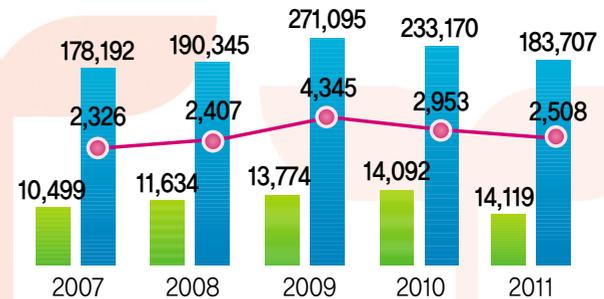


위생 및 유사서비스업의 연간 손실액을
자동차(2천만원)로 환산하면 **1만7천대**



최근 5년간(2007년~2011년) 사고자 수 매년 140여명씩 지속증가

- 사업장, 근로자 수 대비 재해자 수 -



■ 사업장 수
■ 근로자 수
■ 재해자 수

- 사업장 수 연평균 1,000여개소 증가
- 근로자 수 연평균 15,000여명 증가



위생 서비스업근로자의 24시간



추락

높이 제한 경고판에 머리를 부딪힘

청소차량 적재함에 탑승한 채로 이동하던 중, 다리의 높이 제한 경고판을 발견하지 못하고 경고판에 머리를 부딪힌 후 바닥으로 추락

04:30

어느 한적한 골목길의 새벽 4시 반



어이구 허리아~

조금만 더 하면 끝날건데 후다닥 끝내자고~

근데 이씨 어제 김씨 얘기 들었어?

무슨?

도로변 쓰레기 수거작업을 하고 돌아오던 길에 차량 적재함을 타고 가다가...



사고예방 대책

- ▶ 적재함 탑승 중 이동금지
- ▶ 안전모 착용
- ▶ 사고사례 교육 실시



넘어짐

빙판에 미끄러지면서 손목에 골절상

빗자루를 들고 골목길 청소를 가던 중, 살짝 얼은 빙판에 발이 미끄러져 넘어지면서 엉겁결에 바닥을 손으로 짚어 골절 당함





- 사고예방 대책**
- ▶ 이동 시 바닥의 빙판 등을 확인하며 걷기
 - ▶ 눈 온 뒤 뛰거나 서두르지 않기
 - ▶ 사고사례 교육 실시

날아올 예초기 날에 튼 돌맹이에 맞아 부상

도로변에서 예초기로 제초작업을 하다가 동료 작업자가 사용하는 예초기 날에 튼 돌맹이에 맞아서 부상 당함





동료의 예초기 날에 튄 돌맹이가 날아와 내 옆머리에 맞은거야..



다친덴 지금은 괜찮나?

지금은 거의 다 나았지

사소한 부주의가 큰 사고를 일으킨다는 교훈을 얻었지



- 사고예방 대책**
- ▶ 안전한 구조의 예초기 날 사용
 - ▶ 보안면, 무릎보호대 등 보호구 착용
 - ▶ 작업자간 안전거리 유지



중대재해 사례

2000년 0월 서울시 생태공원 인근에서 작업차량 운전자가 차량 뒷부분에 있는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근로자 000씨를 확인하지 못하고 후진하다 충돌하여 병원에 후송하였으나 사망한 재해



재해예방 대책

- ▶ 하역운반 중인 차량 근처에는 접근금지
- ▶ 후진 시에는 유도자를 배치하고 운전자가 유도자의 신호를 준수
- ▶ 후방경보장치, 후방카메라 설치

중대재해 사례

2000년 0월 0일(토) 00시 00분경 경북 영주시 소재 00쓰레기 매립장에서 재해자 000이 압축진개차의 적재함 바닥 청소 상태를 확인하던 중 동료작업자가 작동시킨 개폐장치(파카)와 적재함 사이에 머리가 협착되어 사망한 재해



재해예방 대책

- ▶ 위험장소 내 근로자의 접근금지
- ▶ 작동 전 작업자 위치 확인 철저
- ▶ 파카의 개방 또는 폐쇄 시 경광등 작동

환경만큼 중요한 것이 바로 안전이죠

대한환경(주)

주로 산업폐기물을 처리하는 사업장인 대한환경(주)는 오산에 위치해 있으면서 환경보호를 위해 오늘도 폐기물을 깔끔하게 처리하려 노력하고 있다.

“저희 직원들에게 항상 일하기 전에 충분한 스트레칭과 함께 안전모, 안전화, 보호장갑, 보호복 등 보호장구를 철저히 챙겨서 착용한 후 일하라고 이야기 합니다.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이어서 어찌 보면 잔소리 같지만 재해라는 게 시간과 장소를 가리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매주 회의할 때도 그렇지만 틈나는 대로 안전 관련 교육을 합니다.” 분주하게 일 처리를 하면서도 언제나 자신은 물론 직원의 안전을 책임지고 있다는 생각을 한다는 김근배 사장.

“또 운전석이 아닌 적재함에 탑승한 채로 차량을 운행하거나 적재함에서 뛰어 내리는 것은 절대로 하지 말라고 이야기 합니다. 저희 차량들이 대부분 리프트를 이용해 작업하기 때문에 적재함에 타거나 하진 않지만 그래도 혹시 모르기에 항상 대비하는 마음으로 이야기 합니다.”

차량이 중요한 수단이기 때문에 항상 차량 운전 전에 이상 유무를 확인하는 것은 물론 겨울에는 빙판이 생기거나 해서 미끄럽고 비탈진 곳에서는 천천히 운행하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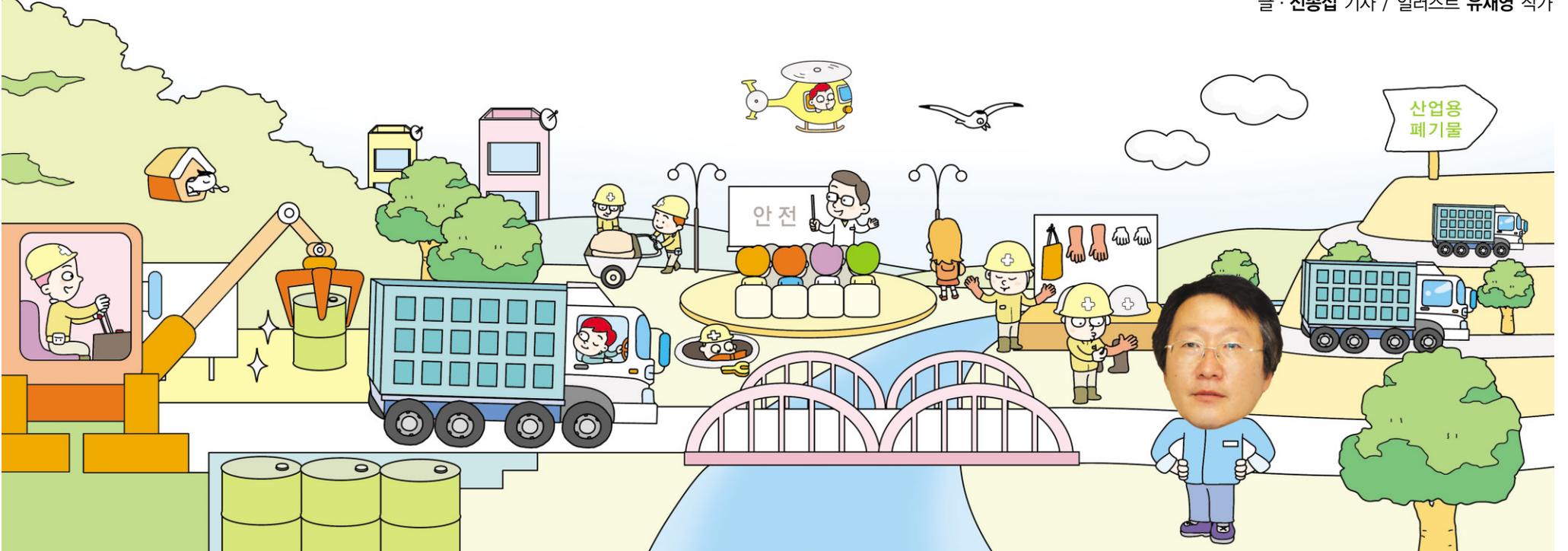
것을 원칙으로 한다.

특히 차량을 가지고 다니면서 산업폐기물을 수거하고 나르는 작업을 계속하는 데 일하는 중에 기계 이상이 생기거나 하면 바쁜 시간 탓에 자신도 모르게 작동 스위치를 켜 상태에서 고장난 부위를 보거나 할 수 있다. 이런 일들은 절대 해서는 안 될 일들이다. 반드시 모든 기계 장치를 정지시킨 후 수리를 해야 하는 것이다. 그리고 폐기물을 들어 올리거나 차를 후진 할때는 항상 주위를 살펴 아무도 없는 것을 확인한 후 작업을 하거나 후진해야 한다.

“저희는 안전작업수칙을 철저히 준수해서 위험 구역에는 절대로 접근하지 않으며, 이동 운행하면서 작업도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특히 운전은 물론 다른 모든 차량에서도 미숙련자는 임의로 작동을 하지 않게 하는 등 안전에 관해서는 다방면으로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또 안전보건공단에서 배포하는 각종 포스터와 정보지를 이용해 매주 교육을 하고 있는데, 내용이 알차고 이해하기 쉬워서 모두가 즐거운 마음으로 교육에 임하고 있습니다.”

기름 값이 올라 힘들고, 매일이 똑같은 작업의 연속이지만 하루하루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들을 꼼꼼히 체크해 나가면서, 성실하게 산업폐기물을 처리해 나가는 그들을 보면 든든한 마음이 든다.

글· 신종섭 기자 / 일러스트 유재영 작가





1 | 산업재해발생 기록 보고 등 (제10조) |

- ① 산업재해(사망자, 4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부상 또는 질병)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재해발생원인 등을 기록 보존
- ② 제1항에 따라 기록한 재해는 그 발생 개요, 원인 및 재발 방지계획 등을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미이행 시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 시행규칙 제4조의 2 [산업재해 기록 등]

사업주는 산업재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보존하여야 한다.

- | | |
|------------------------|------------------|
| 1. 사업장의 개요 및 근로자의 인적사항 | 3. 재해발생의 원인 및 과정 |
| 2. 재해발생의 일시 및 장소 | 4. 재해재발 방지계획 |

2 | 법령 요지의 게시 등 (제11조) |

이 법과 이법에 따른 명령의 요지를 상시 각 사업장에 게시하거나 갖추어 두어 근로자로 하여금 알게 하여야 한다.

※ 미이행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3 | 안전·보건 표지 부착 등 (제12조) |

사업장의 유해하거나 위험한 시설 및 장소에 대한 경고, 비상시의 조치에 대한 안내, 그 밖에 안전의식의 고취를 위하여 안전·보건 표지를 설치하거나 부착하여야 한다.

※ 미이행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4 | 안전조치 (제23조) |

사업을 할 때 다음 각 호의 위험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기계·기구 그 밖의 설비에 의한 위험
2. 폭발성, 발화성 및 인화성 물질 등에 의한 위험
3. 전기, 열, 그 밖의 에너지에 의한 위험

※ 미이행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

5 | 보건조치 (제24조) |

사업을 할 때 발생하는 다음 각 호의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원재료, 가스, 증기, 분진, 흙, 미스트, 산소결핍, 병원체 등에 의한 건강장해
2. 방사선, 유해광선, 고온, 저온, 초음파, 소음, 진동, 이상기압 등에 의한 건강장해
3.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기체, 액체 또는 찌꺼기 등에 의한 건강장해
4. 계측감시, 컴퓨터 단말기 조작, 정밀공작 등의 작업에 의한 건강장해
5. 단순반복작업 또는 인체에 과도한 부담을 주는 작업에 의한 건강장해
6. 환기, 채광, 조명, 보온, 방습, 청결 등의 적정기준을 유지하지 아니하며 발생하는 건강장해

※ 미이행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

6 | 근로자의 준수사항 (제25조) |

근로자는 제23조 및 제24조에 따라 사업주가 한 조치사항을 지켜야 한다.

※ 미이행 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7 | 물질안전보건자료의 작성 비치 (제41조) |

화학물질 또는 화학물질을 함유한 제제(製劑)를 제조·수입·사용·운반 또는 저장하려면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취급근로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여야 한다.

※ 미이행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 | | |
|----------------------|-------------------------|
| 1. 화학물질의 명칭·성분 및 함유량 | 3. 인체 및 환경에 미치는 영향 |
| 2. 안전·보건상의 취급주의 사항 | 4. 그 밖에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

8 | 작업환경측정 (제42조) |

유해인자로부터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작업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인체에 해로운 작업을 하는 작업장은 작업환경측정을 하여야 한다.

※ 미이행 시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9 | 건강진단 (제43조) |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유지하기 위하여 건강진단을 하는 기관에서 근로자에 대한 건강진단을 하여야 한다.

※ 미이행 시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 시행규칙 제99조 [건강진단의 실시 시기 등]

사업주는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중 사무직에 종사하는 근로자 사무실에서 서무, 인사, 경리, 판매, 설계 등의 사무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에 대해서는 2년에 1회 이상, 그 밖의 근로자에 대해서는 1년에 1회 이상, 일반건강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10 | 질병자의 근로금지·제한 (제45조) |

전염병, 정신병 또는 근로로 인하여 병세가 크게 악화될 우려가 있는 질병에 걸린 자에게는 의사의 진단에 따라 근로를 금지하거나 제한하여야 한다.

※ 미이행 시 1,000만원 이하의 벌금

위 법령은 고용노동부·검찰 합동점검 시 위생 및 유사서비스업 산업안전 보건법의 주요 위반사항을 요약한 것으로 사업주는 [영 별표 1]에서 규정된 산업안전보건법 전체를 지켜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법에 대한 더 자세한 내용은 안전보건공단 홈페이지(www.kosha.or.kr)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나의 안전 - 체크리스트

- ▶ 차량이 정지되지 않은 상태에서 수거함 위에서 작업하거나 이동하지는 않는가?
- ▶ 차량의 탑승 가능한 지정 좌석 외에는 탑승하지 않는가?
- ▶ 쓰레기 수거 중 안전모, 안전화, 보호 장갑 등 개인보호구를 착용하는가?
- ▶ 쓰레기 수거차량의 리프트에 비상정지 스위치가 설치되어 있는가?
- ▶ 쓰레기 수거차량의 유압장치(실린더 등)에 방호덮개가 설치되어 있는가?
- ▶ 쓰레기봉투 취급 시 날카로운 물체(깨진 유리 등)가 있는지 확인한 후 작업을 실시하는가?
- ▶ 쌓여있는 폐기물은 붕괴 위험이 없이 적절한 높이로 쌓여 있는가?
- ▶ 컨베이어, 폐지압축기 등에 비상정지 스위치가 설치되어 있는지 확인했는가?
- ▶ 컨베이어 벨트 사이에 끼인 물품을 제거할 때 컨베이어의 가동을 멈춘 후 제거하는가?
- ▶ 고철 등 중량물 운반 작업 시 지게차 등의 인력 대체설비를 사용하는가?
- ▶ 무거운 물체 운반 시 2인 1조로 작업을 실시하는가?
- ▶ 올바른 중량물 취급방법에 대해 알고 있는가?

나의 건강을 지키는 스트레칭!

목운동



양손을 깎지 껴 아래로 지긋이 누른다



엄지손가락을 턱에 대고 위로 천천히 민다



머리에 손을 얹은 후 옆으로 천천히 당긴다

어깨운동



양쪽 어깨를 위로 지긋이 올렸다가 내린다



천천히 원을 그리며 어깨 관절을 돌린다



팔꿈치를 몸 쪽으로 천천히 당긴다

팔목운동



손가락을 깎지 끼고 손과 손목을 돌린다



다섯 손가락을 짝 폼다 구부렸다를 반복한다



한쪽 손은 뒤로 젖히고 몸쪽으로 천천히 당긴다

허리운동



양손을 깎지 끼고 머리 위로 천천히 뻗는다



등 뒤로 깎지 끼고 팔을 위로 올린다



다리를 꼬고 앉아 허리를 비튼다

